

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절차

1. 목적

- 1.1 본 업무절차는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및 금지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 정의

- 2.1 본 업무절차는 『반부패 준법규정』에 기술된 정의를 적용한다.

2.2 범죄수익

범죄수익은 범죄의 실행을 통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취득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.

2.3 자금세탁행위

자금세탁행위란 범죄수익의 취득·처분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·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
2.4 테러자금조달행위

테러자금조달행위란 테러 관련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자금 제공을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.

3.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절차

- 3.1.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는 아래의 경우를 의미한다.

- 제재, 금수 조치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가 내려진 특정 국가¹로의 대금 지급의 경우
- 범죄 또는 테러 활동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/국가²로의 대금 지급의

¹ 『제재 준수 업무절차』 3.1.3. (1) 소정의 '포괄제재 대상 국가/지역'을 의미한다.

² 『제재 준수 업무절차』 3.1.3. (1) 소정의 '표적제재 대상 국가/지역'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(FATF,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)가 지정한 black list 국가 및 grey list 국가를 의미한다. <https://www.fatf-gafi.org/en/countries/black-and-grey-lists.html>

경우

- 거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,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래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거래조건 혹은 회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하는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
- 거래 상대방과 회사 간의 사업 관계에 비추어 이례적인 거래
- 거래상대방의 소재 국가가 아닌 제3국에 개설된 은행 계좌의 사용을 제안하는 경우
- 거래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의 잦은 변경 및 그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
- 합리적인 사유 없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거래대금의 지급인 또는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경우
- 거래대금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
- 거래대금을 청구서에 명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
- 주문 취소 또는 당초의 결제방식과 다른 방식의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
(예를 들어 특정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을 다른 계좌로 지정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)
- 허위 혹은 과다 청구서가 포함된 대금 지급의 경우

3.2. 회사 임직원은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과정에서 상기 3.1에 해당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확인한 경우,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.

4.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

- 4.1 회사 임직원은 거래상대방과의 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『거래상대방 반부패 실사 업무절차』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.
- 4.2 회사 임직원은 거래상대방이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국내·외 반부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.

5. 조사 및 수사 방해 행위 금지

- 5.1 회사 임직원이 본 업무절차의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였거나,

위반으로 인하여 회사 내부조사 또는 외부 수사기관 등에 의한 조사 및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,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의도적으로 관련 증거 자료를 파기, 위조, 변조 또는 은닉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
- 수사 (또는 회사 내부조사) 대상 사건에 대해 관련 임직원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관련 임직원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
- 그 외 기타 조사 및 수사 방해 행위